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1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윤중군의원 대표발의(제221641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안 제32조제4항)	3

I.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제221641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종균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1. 29.

다. 회 부 일 : 2026. 1.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안 제32조제4항)

개정안은 현행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현행법 제34조 및 제35조)을 개정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사업자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에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략)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 --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가설기자재

현행	개정안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 ----- ----- ----- -----. ----- ----- ----- ----- ----- ----- ----- ----- ----- ----- ----- ----- -----.

(1)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제34조의 준용 사항 개정)

현행법 제32조제4항¹⁾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

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함), 가설기자재²⁾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행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중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과 기한 내 미지급시의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인 제1항과 제8항³⁾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34조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인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⁴⁾을 추가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되,

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飛階)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를 합판 거푸집

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준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준용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34조 중 제32조제4항에 준용되는 사항 비교(요약) 】

현행법 제34조 각 항의 주요 내용		제32조제4항에 준용 여부	
		현행	개정안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 수급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u>15일 이내</u> 하수급인에게 <u>하도급대금 지급</u>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u>가설기자재 대여대금</u> 지급에 준용	(현행과 같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규정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준용 안함	가설기자재 <u>대여대금</u> 지급에 준용 추가 ⇒ <u>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u> 도입
	-제3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기재		
	-제5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 (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4조 각 항의 주요 내용			제32조제4항에 준용 여부	
			현 행	개정안
계약 또는 해지 시 통보	<u>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u>			
-제6항- 지급보증 내용 확인 및 시정 요구	○ 발주자: 하도급대금 <u>지급 보증내용을 확인</u> 하여야 하 고, 확인 결과 <u>보증내용이 부적정 시 수급인에게 시 정 요구</u>			
-제7항- 공공공사 발주자는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 관인 발주자: 수급인의 <u>하 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 부 여부 확인</u>			
-제8항- 기한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이자 지급	○ 수급인: 하도급대금 <u>지급 기한 내에 미지급시</u> 그 초 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 의 25 이내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u>이 자 지급</u>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u>가설기자재 대여대금</u> 지급에 준용	(현행과 같음)	

가설기자재 대여 시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⁵⁾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증 계약 체결이 저조한 상황임.

5) 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가설기자재대여업 회원사 184개소를 대상으로 2020.10.8.부터 2022.10.31.까지 약 2년 동안의 체불현황조사 결과 54개소에서 체불현황자료를 제출하였고, 1개소 당 평균 체불액은 약 11억 8,800만원이었던 것으로 설명함.

【 최근 3년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문건설공제조합	4	3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현행법 제68조의3⁶⁾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2.12.18.에 신설⁷⁾된 것으로, 건설사업자의 고의부도 ·

6)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2013.6.19. 시행)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하여 공사대금(현행법 제22조의2)⁸⁾이나 하도급대금(현행법 제22조의2)⁹⁾의 경우와 같이 그 지급을 보증하여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¹⁰⁾

개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에 있어서도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금 체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576호, 2012.12.18. 일부개정, 2013.6.19. 시행)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1519호, 2012.11.22.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동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참고

(2)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도급인이 직접 지급

(제35조의 준용 사항 개정)

현행법 제32조제4항¹¹⁾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행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¹²⁾를 준용하도록 하되,

1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를,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준용 및 준용 제외 사항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제32조제4항 전단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행법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제4항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35조제2항제6호는 준용 제외	(현행과 같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단 중 괄호 부분	제작납품업자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준용 제외	(현행과 같음)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준용 제외	제35조제2항제6호는 준용 제외 ⇒ 제35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도록 개정

현행법 제35조제2항제5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없어 이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현행법 제34조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법 제35조를 준용함에 있어서도 지급보증 제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 제35조제2항제5호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진바,

건설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자가 건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대금 체불로 인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제32조제4항에 준용 여부 비교】

현행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	제32조제4항에 준용 여부	
	현 행	개정안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u>발주자와 수급인 간</u> 또는 <u>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u> 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u>합의</u> 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u>확정판결</u> 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u>2회 이상 지체</u> 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u>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u> 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u>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u> 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u>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u> 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에 준용	(현행과 같음)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u>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u> 로서 <u>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u> 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u>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u> 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준용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u>가설기자재 대여대금</u> 지급에는 <u>준용 제외</u>	건설기계 대여대금, <u>가설기자재 대여대금</u> 지급에 준용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지급에는 <u>준용 제외</u>
6.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u> 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u>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u> 한 경우	준용 안함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에 준용 제외	(현행과 같음)

(3) 개정안 심사 시 고려 사항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32조제4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행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별로 준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을 제68조의3¹³⁾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입법례와 같이 별도의 조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1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건설가설협회는 동의 의견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단체 간 이견이 있음(p.16. 참고).

반대 의견의 이유 중에는 가설기자재 업계에서 제시하는 피해 규모 (연간 약 1,000억원)가 단순 설문조사 결과 산출된 추정치로 정확한 체불 실태로 볼 수 없고, 법 개정에 따른 지급보증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 수가 불분명¹⁴⁾하다는 점 등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체 및 대여대금 체불 규모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단체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

개정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사업(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기자재와 관련해서는 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가설기자재의 특성상 체불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급 보증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건설사업자 단체에서는 보증의 효과, 보호 대상이 되는 업체·자재 종류 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단체와 가설기자재 대여사업자 단체간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최근 대금 보호를 위한 정책¹⁵⁾들이 추진되고 있어 보증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설기자재 대여업체 수와 체불 규모 등이 불분명하여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여, 보증서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공정계약 환경의 선제적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영세사업자로 대금이 체불되는 경우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바, 건설사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급보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15)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급,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집시스템 활용 확대 등